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10

2017. 9. 1. 기 획 경 제 위 원 회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7년 8월 16일

다. 상정결과: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7.9.1.)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일자리노동국장 조인동)

1. 제안이유

가. 서울시근로자복지관 운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서울시근로자복지관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 나. 서울시근로자복지관은 92년 건립, 9차에 걸쳐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 다.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의거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 소 재 지 : 영등포구 국회대로 44길 10(영등포동 7가 57)

○ 시설규모 : 연면적 3.321.6 m² (지하1층~지상5층)

○ 개 관 일 : 1992. 11. 3.

○ 수 탁 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 위탁기간 : 2014. 9. 25.~2017. 9. 24.(9차)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근로자 및 산하 노동조합 조합원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7.9.25. ~ 2020.9.24.)

○ 위탁업무

- 노동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 교육사업(노동인권, 노동법, 성인지 등)
- 노동자 권익증진 및 복리향상 사업 등
- 노동단체 사무공간 제공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18년) : 3,410천원(시설 유지·보수비)
 - ※ 운영비용은 수탁업체 부담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라. 서울시근로자복지관 운영경과

- `89.03.02: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에서 건립 건의
- `90.02.13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건립계획(시장방침 제 346호) 수립
- `92.10.15 : 서울시근로자복지관(영등포동 7가 57) 준공(11.13 개관)
- '92.09.25 :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체결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위탁계약(재계약)체결 현황
 - 민간위탁계약 1차 : `92.09.25 ~ `93.09.24(1년)
 - 민간위탁계약 2차 : `93.09.25 ~ `96.09.24(3년)
 - 민간위탁계약 3차 : `96.09.25 ~ `99.09.24(3년)

- 민간위탁계약 4차 : `99.09.25 ~ `02.09.24(3년)
- 민간위탁계약 5차 : `02.09.25 ~ `05.09.24(3년)
- 민간위탁계약 6차 : `05.09.25 ~ `08.09.24(3년)
- 민간위탁계약 7차 : `08.09.25 ~ `11.09.24(3년)
- 민간위탁계약 8차 : `11.09.25 ~ `14.09.24(3년)
- 민간위탁계약 9차 : `14.09.25 ~ `17.09.24(3년)

마.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근로자 및 노동관계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
- 노동단체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조직되는 단체로서 노동전문가 확보, 조직 인프라 확보, 노동상담, 법률지원 등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기능이 노동단체의 고유기능으로서 복지관 수탁자로서 적합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에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위탁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근로자 복지관"의 위탁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재계약 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은 1992년부터 9차에 걸쳐 위탁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부칙 제2조1)에 따라 조례안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나.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현황

 서울시(이하 "시")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영등 포구 영등포동에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시행 및 복지관의 시설관리에 대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위탁운영 중임.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부칙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은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상담서비스 및 법률 지원 업무를 제공하고, 노동관련 교육사업 및 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나 산하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

-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개요〉

○ 소 재 지 : 영등포구 국회대로44길 10

○ 시설규모 : 3.321.6 m² (지하 1층/지상 5층)

층별	면적(m²)	용 도
지하 1층	737,3	기계실, 전기발전실, 창고
지상 1층	606.38	어린이집
지상 2층	314.18	노동단체 사무실, 식당
지상 3층	454.58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사무실, 회의실(강의실), 노동법률지원센터 등
지상 4층	454.58	노동단체 사무실
지상 5층	454.58	대강당

○ 인력현황 : 32명 (부속시설인 어린이집 인력 18명 별도)

- 운영내용
 - 서울지역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 노동교육 및 각종 권익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운영
 - 노동단체 사무공간 제공 및 각종 교육, 회의공간 제공
 - 근로자 자녀 어린이집 운영 등

 시가 최근 3년간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에 지원한 민간위탁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민간위탁금은 모두 민간대행사업비 항목으로 근로자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사용하였음.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위탁사업비 내역〉

(단위: 천원)

	민 간 대 행 사 업 비	세부 내역
2014년	43,065	-화장실 시설물 교체공사 -화장실 도색공사, 화재감지기 교체공사 -급수용 펌프 교체공사
2015년	75,350	-엘리베이터 공사, 보일러 설치공사 -전기중앙분전반 교체공사 등, -냉난방 보일러세관 및 정화조 펌프교체 공사
2016년	62,420	-시수배관 및 정화조펌프 교체 -사무실 형광등 및 다운라이트 등 LED등 교체공사 -지하저수고 및 옥상 물탱크 청소, 옥상방수 공사
2017년	26,675	-승강기로프교체 및 도어안전장치 설치 -보일러 세관 등 보수

-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은 지난 3년간(2014~16년) 시가 교부한 민간대행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시설유지보수 외에도 노동 법률상담, 노동법강좌 등 약 4,000회의 법률지원사업, 2,000 여권의 노동상담 사례집 발간 등 노동법률지원센터의 운영과 어린 이집, 대강당, 회의실 등의 복지관 시설들을 운용하였음.
 - ※ 상세한 운영실적은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참조
- 현재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은 노후된 강당 시설의 증축 공사중이며, 더 많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노동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된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주변 환경개선 등근로자복지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와 수탁기관의 지속적인노력이 필요함.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

-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의 현 수탁기관인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는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된 단체로, 노동관련기관들과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과 노동관계에 대한 경험과 역량이 풍부하여 동 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25년째 위탁운영중으로, 최근 3년의 위탁기간동안 노동법률상담 3,608 건, 노동법 교육 156회, 취약지구 파견 무료법률상담 180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등 양호한 운영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또한 수탁기관인 한국노총에서 시설유지보수비용 이외의 복지관의 사업비 및 인건비에 대해 별도의 시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부담하고 있어, 직영보다는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시는 향후에도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010

제출년월일: 2017년 8월 14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근로자복지관 운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서울시근로자복지관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 나. 서울시근로자복지관은 92년 건립, 9차에 걸쳐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 다.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의거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 소 재 지 : 영등포구 국회대로 44길 10(영등포동 7가 57)

○ 시설규모 : 연면적 3,321.6 m² (지하1층~지상5층)

○ 개 관 일 : 1992. 11. 3.

○ 수 탁 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 위탁기간 : 2014. 9. 25.~2017. 9. 24.(9차)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근로자 및 산하 노동조합 조합원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7.9.25. ~ 2020.9.24.)
- 위탁업무
 - 노동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 교육사업(노동인권, 노동법, 성인지 등)
 - 노동자 권익증진 및 복리향상 사업 등
 - 노동단체 사무공간 제공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18년) : 3,410천원(시설 유지·보수비)
 - ※ 운영비용은 수탁업체 부담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라. 서울시근로자복지관 운영경과
 - `89.03.02 :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에서 건립 건의
 - `90.02.13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건립계획(시장방침 제 346호) 수립
 - `92.10.15 : 서울시근로자복지관(영등포동 7가 57) 준공(11.13 개관)
 - '92.09.25 :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체결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위탁계약(재계약)체결 현황
 - 민간위탁계약 1차 : `92.09.25 ~ `93.09.24(1년)
 - 민간위탁계약 2차 : `93.09.25 ~ `96.09.24(3년)
 - 민간위탁계약 3차 : `96.09.25 ~ `99.09.24(3년)

- 민간위탁계약 4차 : `99.09.25 ~ `02.09.24(3년)
- 민간위탁계약 5차 : `02.09.25 ~ `05.09.24(3년)
- 민간위탁계약 6차 : `05.09.25 ~ `08.09.24(3년)
- 민간위탁계약 7차 : `08.09.25 ~ `11.09.24(3년)
- 민간위탁계약 8차 : `11.09.25 ~ `14.09.24(3년)
- 민간위탁계약 9차 : `14.09.25 ~ `17.09.24(3년)

마.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근로자 및 노동관계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
- 노동단체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조직되는 단체로서 노동전문가 확보, 조직 인프라 확보, 노동상담, 법률지원 등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기능이 노동단체의 고유기능으로서 복지관 수탁자로서 적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노동조합(지부·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 ① 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워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와 제4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운영)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의 명칭 및 기능은 별표와 같다.

[별표] 서울특별시근로복지시설 명칭 및 기능(제3조 관련)

	= = <i>x</i>
명 칭	기 능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근로자 복지증진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근로자 복지증진
서울노동권익센터	근로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3조에 따른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직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노동정책담당관 복지시설팀 길민하 (☎ 2133-5426)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

□ 민간위탁사업 개요

○ 추진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제1항

○ 사업내용 : 근로자 권익보호 증진 및 복지관 시설유지관리

○ 추진경과

- `89.03.02 :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에서 건립 건의

- '90.02.13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건립계획(시장방침 제 346호) 수립

- `92.10.15 : 서울시근로자복지관(영등포동 7가 57) 준공(11.13 개관)

- '92.09.25 :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체결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위탁계약(재계약)체결 현황

· 민간위탁계약 1차 : `92.09.25 ~ `93.09.24(1년)

· 민간위탁계약 2차 : `93.09.25 ~ `96.09.24(3년)

· 민간위탁계약 3차 : `96.09.25 ~ `99.09.24(3년)

· 민간위탁계약 4차 : `99.09.25 ~ `02.09.24(3년)

· 민간위탁계약 5차 : `02.09.25 ~ `05.09.24(3년)

· 민간위탁계약 6차 : `05.09.25 ~ `08.09.24(3년)

· 민간위탁계약 7차 : `08.09.25 ~ `11.09.24(3년)

· 민간위탁계약 8차 : `11.09.25 ~ `14.09.24(3년)

· 민간위탁계약 9차 : `14.09.25 ~ `17.09.24(3년)

○ 사업현황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 소 재 지 : 영등포구 국회대로 44길 10(영등포동 7가 57)

- 시설규모 : 연면적 3,321.6 m²(지하1층~지상5층)

구 분	연면적	사무실	노 동 법률센터	회의실	어린이집	대강당	기 타
면적(m²)	3,321.6	980	33.5	67.2	676	455	1,109.9

- 개 관 일 : 1992. 11. 3.

- 수 탁 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 위탁기간 : 2014. 9. 25.~2017. 9. 24.(9차)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근로자 및 산하 노동조합 조합원

□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 노동법률지원센터 운영

(단위 : 명)

사업명	계		2014년		2015년		2016년	
MEG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법률지원사업계	3,945	9,645	1,240	2,562	1,399	3,280	1,305	3,803
노동법률 상담	3,608	3,608	1,138	1,138	1,297	1.297	1,173	1,173
테마별 노동법 강좌	79	1,362	24	135	25	497	30	730
현장방문교육	77	2,706	24	680	19	684	34	1,342
취약지구 파견 무료법률 상담	180	1,968	54	609	58	802	68	558
노동상담사례집 발간	2,100권		700권		700권		700권	

○ 시설 운용 실적

(단위 : 명)

시설명	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어린이집	4,068	1,356	1,356	1,356	
대강당	14,730	5,960	4,800	3,970	
회의실	4,313	1,297	1,452	1,564	

○ 근로자복지관 시설유지보수 실적

연도별	사업명 (사업계획)	추진 실적	비고
2014년	서울시 근로자 복지관 시설 유지 보수	·화장실 세면기, 소변기, 좌변기 교체 ·화장실 및 기계실 전기실 방진도색 ·급수용 펌프 교체 및 부대설비 공사	
2015년	서울시 근로자 복지관 시설 유지 보수	·온수 보일러 설치 공사 ·냉난방보일러 세관 및 정화조 펌프교체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전기중앙분전반 교체공사	
2016년	서울시 근로자 복지관 시설 유지 보수	·시수 배관 및 정화조 펌프교체 ·사무실 형광등 및 다운라이트LED교체공사 ·지하저수조 및 옥상물탱크 청소 ·옥상방수 작업	

○ 연도별 예산 대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2014년		201	5년	2016년		
사합경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서울시근로자복지관 시설유지보수	43,065	43,065	75,350	75,350	62,420	62,420	

□ 민간위탁사업 향후계획

○ 성과평가 결과 요약

- 근로자복지관에서 시행하는 노동상담 서비스는 인근지역을 벗어나 상담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운영 필요
- 어린이집 운영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매우 유익한 사업
- 노조원 뿐만 아니라 식당, 청소, 알바 등 비정규 노동자들인 취약계층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필요

○ 개선계획

- 자치구 근로자복지센터와의 연계, 서울지역 법률지원사업 시스템 완성 등
- 취약계층 근로자 권익 대변사업 집중 시행
- 계층과 내용의 차별성에 입각한 다양한 근로자 교육사업 전개